

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4가단84 판결 [건물명도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4. 10. 1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C호’ 63.6㎡를 인도하고,
나. 600만 원 및 2024. 9. 11.부터 위 가.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김현준

별지